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소영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여성기업 확인 신청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신청 유형별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,

여성기업 확인 신청업체의 증가에 따른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확대를 위해 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기업 확인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여성기업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위임·위탁한 권한을 조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확인서 발급 후 상호명·대표자 등이 변경되어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정하고 별지1호의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서식을 변경함(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, 별지1호)

나. 여성기업 확인 신청업체의 증가에 따른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확대를 위해 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기업

확인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5항 신설)
다. 여성기업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함(별지1호)
라. 여성기업 확인 후 여성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
제출 요청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협회로 변경함(안 제18조
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추진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추진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인을 재신청하는 경우 기존 자료 제출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여성기업이 확인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제3호 중 “따른 보고와”를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여성기업 확인 신청서
([] 신규 확인 [] 변경확인 [] 재확인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신청인	기업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업종
	대표자	형태 ☐ 주식회사, ☐ 유한·유한책임회사, ☐ 합자·합명회사 ☐ 개인 ☐ 협동조합	
	주소		
	(전화번호:)		
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(세세분류)	코드	항목명	
주생산품목(G2B)	물품분류번호	한글품명	
사업개시일	여성대표자 취임일		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성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		년	월 일
	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
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
(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)

귀하

첨부서류	1. 신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. 「상법」상 회사인 경우 : 주주명부, 직원명부, 정관 각 1부 나. 개인사업자인 경우: 동업계약서(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다. 협동조합인 경우 : 조합원명부, 출자자명부, 임원명부 각 1부 2. 변경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: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.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: 제1호에 따른 서류(다만, 확인의 유효기간 중에 종전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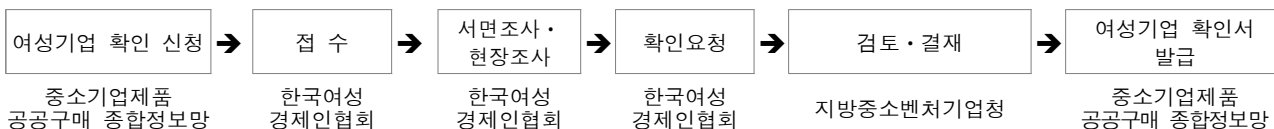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여성기업 확인 등)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이하 “구매정보망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15조(여성기업 확인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</u> <u>확인을 재신청하는 경우 기존</u> <u>자료 제출의 변동이 없는 경우</u> <u>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u>
1. ~ 3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 <신 설>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</u> <u>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및</u> <u>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</u> <u>부 또는 전부를 여성기업 확인</u> <u>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</u> <u>수 있다.</u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6조(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2. (생략)

3. 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

4. (생략)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

⑥ ----- 제5항-----

-----.

제16조(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여성기업이 확인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따른 -----
--

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3.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</u>
--	--